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19. 8.14(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 좌 장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 | 발 제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 토 론 |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조용경 포스코엔지니어링 前부회장
박진종 공감신문 기자
신승섭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협의회
최금섭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신창현, **공감신문** 대표 박준선

Better Tomorrow With Sharin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입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에 관심 갖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공감신문 박준선 대표를 비롯해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의 추락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7월에는 부산, 6월에는 세종, 지난 4월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사고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5명의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자가 고령의 일용직인데다가 단기간에 종료되는 외벽 도색작업 특성상 지도점검을 나서기도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에게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한 외벽 도색작업자의 95.5%가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안전대책과 안전장비 사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의 안전대책들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외벽도색 뿐 아니라 건설분야에서의 사망사고 및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이명구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정진우 교수님, 다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감신문 대표 박준선입니다.

우선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여 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여주신 내외빈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외벽 도색은 매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뚜렷한 개선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외벽 도색 등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외벽 도색은 불합리한 사업구조, 빈번한 안전규정 미준수 등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분야입니다.

더 이상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법을 외벽 도색 작업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불합리한 외벽 도색 사업구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 학계, 노동계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신 귀한 자리입니다. 어렵게 모여주신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발제

외벽도색작업 등 고소로프작업 종사
노동자 추락사고 방지방안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외벽도색작업 등 고소로프작업 종사 노동자 추락사고 방지방안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1. 들어가며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의 고소작업의 일종으로서 작업장소의 상부에서 로프를 내려뜨려 그 로프로 신체를 지지하면서 행하는 작업(이하 '고소(高所)로프작업'이라 한다)이 건물 외벽·설비 도장작업, 건물유리창 청소작업, 콘크리트 면처리작업, 급사면(急斜面)에서의 작업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 고소로프작업에서 로프의 매듭이 풀리거나 로프가 절단되거나 지지물이 이탈되거나 구멍로프를 착용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매년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다.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대체의 추락방지조치도 인정되고 있지만, 업종, 작업양태에 관계없이 고소작업의 추락방지조치는 어디까지나 작업발판의 설치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비계,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등에 의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고소작업에서는 고소로프작업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
- 고소로프작업은 전형적인 고소작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재해 등의 중대한 재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작업으로서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안전대책, 특히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고소로프작업에서는 작업장소의 상방에서 수직으로 로프를 내려뜨리고 그 로프를 타고 내려가면서 행하는 작업 외에 사면(斜面)에서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발표문은 외벽도장작업과 같은 수직면에서의 작업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언하는 것으로 한다.

2. 고소로프작업을 둘러싼 현상

가.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사망재해 발생현황

- 고소로프작업에 관련된 사망재해 현황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통계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매스컴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매년 약 8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보도되지 않은 사고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발생하는 사망재해 건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지금까지 매스컴에 보도된 사망재해를 분석해 보면 그 발생유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작업 중 지지물로부터 로프가 풀려 추락
 - ② 작업 중 로프가 절단(파단)되어 추락
 - ③ 작업 중 로프의 지지물의 이탈·파손으로 추락
 - ④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
 - ⑤ 작업 중 로프와 안전대 간의 접촉이 풀려(접촉하지 않아) 추락
 - ⑥ 안전대(후크)가 망가진 것을 사용하여 추락
 - ⑦ 옥상에서의 준비작업 중, 이동(탑승) 중에 추락
 - ⑧ 하강 중에 로프의 길이가 짧아 추락
 - ⑨ 작업 중 작업용구가 떨어져 하부에 있던 노동자가 맞음
 - ⑩ 기타

나. 금년도 외부도색작업 중 사망사고 매스컴 보도 건

- 금년도(2019년 7월말 현재)에 외부도색작업 중에 사망한 사건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① 세종시 아파트 도색 작업자 추락 사망 (KBS 6월)
 - ▶ 2인 1조 작업규정 지켰지만, 밧줄 고정하는 볼트 연결하지 않아
 - ② 대구시 동구 신천동 추락 사망 (뉴스인 6월)
 - ▶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안전대 고리줄 연결하지 않아
 - ③ 대전 아파트 도색공사 추락 사망 (KBS 3월)
 - ▶ 하강하던 작업대가 갑자기 로프에서 이탈
 - ④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외벽 도색 추락 사망(KBS 7월)
 - ▶ 줄이 끊기며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⑤ 부산 중구 보수동 4층 건물 외벽 도색작업 추락 사망(부산일보 7월)

▶ 도색작업 중 추락해 사망(원인불명)

⑥ 울산 중구 외벽 도장 공사 추락사망(경상일보 7월)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로프 앵글 파손

- 외벽도색작업 외에 위험도가 그에 못지않은 다른 고소로프작업(건물유리창 청소작업, 급사면에 서의 작업 등)까지를 고려하면 로소로프작업에서서의 사망사고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3. 고소로프작업에 대한 현행 추락방지정책

가. 고소작업에서의 추락방지조치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해 작업 발판의 설치 등 다음과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① 작업발판의 설치(제42조)

②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제43조)

③ 안전대의 부착설비(제44조)

④ 조명의 유지(제49조)

⑤ 기타

나.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추락방지조치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하에서는 고소로프작업은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안전대의 사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강구하였을 때에 한하여 고소로프작업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현재 행정에서는 고소로프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달비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고소로프작업에 기인한 사고 예방자료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을 뿐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예방지도감독은 전개하고 있지 않다.

다. 고소로프작업에 대한 추락방지정책의 빈곤(부실)

- 행정에서는 고소로프작업을 달비계작업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64조를 적용하여 왔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KOSHA Guide을 통해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지·홍보하여 왔다.

- 그러나 고소로프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달비계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명백히 잘못된 법적용이다. 기본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것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고소로프작업에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정(조항)을 적용하고, 그 결과 필요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고소로프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달비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동작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동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업이 위험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소로프작업 시 작업에 따라서는 작업대를 이용하는 것보다 하네스(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데 현행 규칙은 하네스의 착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비계는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의 일종으로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비계는 작업발판 및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총칭을 가리킨다.
- 달비계(hanging scaffolding, suspended scaffolding)는 교량공사, 플랜트·조선 유지보수공사, 철골공사 시 철골의 들보 등에 작업발판을 달아매는(위에서 달아 내린) 비계로서 고소작업용 비계이다. 건물의 외벽도장작업 시에 사용되는 작업의자(작업대)는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로프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를 총칭하여 비계라고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건물의 외벽도장작업 시에 사용되는 작업의자(작업대) 등을 달비계라고 부르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달비계에 관한 규정은 고소로프작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으로는 고소로프작업의 위험성을 커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소로프작업에는 달비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이에 맞는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소로프작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밖에 없는 상태이다.
- 즉, 주로프(작업용 로프)와 구명로프(보조로프), 이것들을 지지물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連結具), 신체유지기구, 이것을 작업용 로프에 설치하기 위한 접속기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특별안전교육, 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시작 전 점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마디로 고소로프작업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 등이 작용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소로프작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홍보만 하고 있을 뿐 기술지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조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에서는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사망재해를 비롯한 재해발생에 관한 통계와 재해발생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고소로프작업의 위험, 예방의 필요성, 재해방지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아 왔다.
- 요컨대, 가장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고소로프작업 종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규제, 지도감독, 기초통계 등 전반적인 면에서 그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정부의 역할과 존재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4. 고소로프작업의 안전대책(제언)

가. 안전대책의 기본적인 방향

- 고소로프작업은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작업이지만, 그 안전대책은 로프의 연결, 로프의 점검, 로프의 절단 방지조치 및 이것들의 확인 등 사람의 주의력, 기능에 의존하는 측면이 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로프작업 중의 하강, 정지 등 작업에서의 기본동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와 같이 고소로프작업은 사망재해 등의 중대한 재해로 연결되기 쉬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인 한편, 그 안전대책의 요점을 '사람'의 주의, 기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것을 사업주, 작업자 및 발주자가 확실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소로프작업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이하에 제시하는 복수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로 연결될 위험성을 최대한 저감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 서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대책의 다중화

-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추락에 의한 재해는 작업 시 신체를 지지하는 로프, 안전대 등의 접촉에 문제가 발생한 결과, 신체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고소로프작업의 안전대책에서 작업 중에 상시 하중이 걸리는 작업용의 주로프(신체지이용 로프)에 의한 계통과 작업 중에 하중이 걸리지 않는 안전대의 체결설비로서의 구명줄(추락방지용 로프)에 의한 계통 2계통을 확보하면 1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1계통에 의해 신체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로프, 안전대의 접촉상태를 복수의 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작업자의 잘못된 취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추락방지조치 그 자체를 다중화(多重化)하고 조치상황의 확인을 다중화하는 것에 의해 추락의 리스크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

다. 안전교육의 확실한 실시

- 고소로프작업에서 신체의 지지를 상실하는 원인으로 로프가 풀리거나 절단되거나 안전대와 로프 간의 접촉이 벗겨지는 등의 요인이 있다. 이러한 재해는 작업에 사용하는 로프, 용구의 점검,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사람’의 주의력, 기능에 의존하는 면이 많은 이상, 고소로프작업의 안전대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작업에 임하는 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작업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한 기능의 향상이 불가결하다. 이 때문에 고소로프작업을 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기 양면에서 충실한 안전교육(특별안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고소로프작업의 구체적인 안전대책

1) 로프의 결속

- 신체지지기구(작업대, 하네스 등)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용 로프(주로프) 이외에 안전대를 체결하기 위한 구명로프(보조로프: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용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현저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용 로프, 구명로프, 신체지지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작업용 로프 및 구명로프는 각각 다른 견고한 지지물에 벗겨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결속할 것
 - ② 작업용 로프 및 구명로프는 고소로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할 것
 - ③ 돌기물 등에 의해 작업용 로프 또는 구명로프가 절단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덮개, 보호재를 설치하는 등 절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④ 신체지지기구는 작업용 로프에 접속기구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결속할 것

2) 사전조사 및 기록

- 미리 작업을 행할 장소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 수립

- 미리 위 조사에 의해 알게 된 내용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노동자에게 주지시키는 한편, 당해 작업계획에 의해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은 작업의 방법, 순서 등의 사항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정하여 그 자에게 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의 지휘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위에서 제시한 각종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는지의 점검을 행하도록 한다. 작업지휘자 지정이 법제화되면 발주금액(안전보건관리비)에 당연히 반영되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5) 특별안전교육 실시

-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소로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서의 안전을 위한 특별교육(이론교육+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대·보호구 착용

- 고소로프작업을 행할 때는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체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안전대는 구명로프에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대의 그립(grip)은 사용하는 구명로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을 지시받은 노동자는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대의 체결에 대해서는 복수인(複數人)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작업 개시 전 점검 실시

- 고소로프작업을 행할 때는 그 날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주로프·구명로프,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 시공업체는 작업개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로프작업 실시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사고조사 통계 및 결과 공개

- 정부는 대표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고소로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통계 및 재해발생내용을 조속히 공개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고소로프작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소로프작업 외의 다른 위험작업 또한 동일하게 필요).

10) 발주자에 대한 의무

- 안전한 작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금년 1.16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의무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그마저도 50억 이상 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외벽도색작업과 같은 유지보수공사는 사실상 법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 즉, 발주자에 대하여 ① 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공사비의 산정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경비를 반영하도록 하며, ③ 적정한 공기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④ 수급업체 선정 심사 시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능력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01

토론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 개선방안
- 외벽 도장작업 중심 -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 개선방안

- 외벽 도장작업 중심 -

2019. 8. 14.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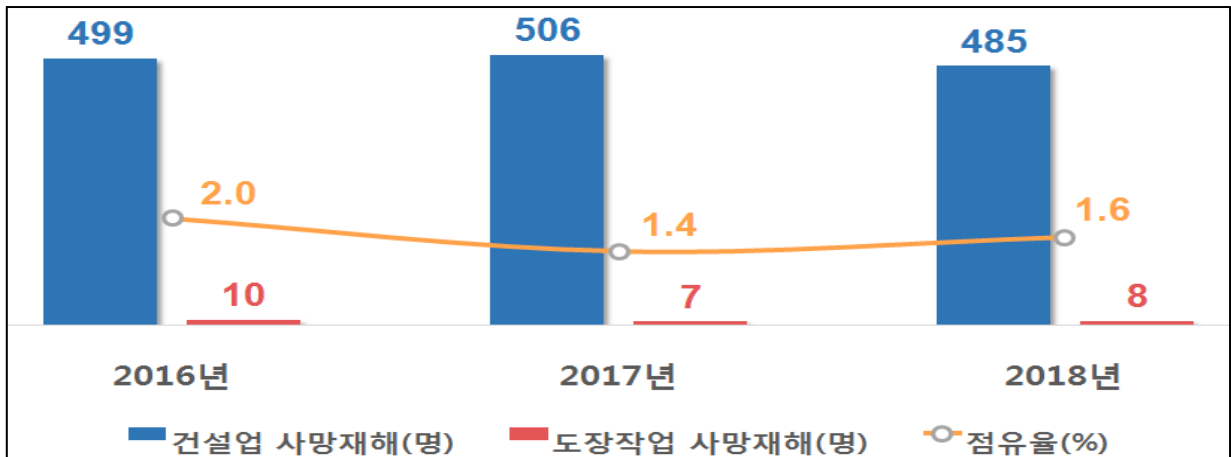
I. 도장작업 사망재해 현황	1
II. 재해발생 원인	2
III. 개선방안	3

〈 참고 〉 외벽 도장작업 추락 사망재해 세부현황

I. 도장작업 사망재해 현황

- 최근 3년간('16년~'18년) 외벽 도장 작업* 중 25명 사망,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자의 약 1.7% 점유(年 평균 약 8명 사망)

< 최근 3년간 외벽 도장공사 사망재해 현황 >



※ 달비계, 비계 등에서 건물외부(아파트 외벽 등) 도장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재해에 한해 산출(건물내부 도장 작업 제외)

- 비계·작업발판(87명), 단부·개구부(53명)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발생

□ 사망재해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 공사종류별은 아파트 공사, 공사규모별로 3억원 미만 영세현장, 원인별은 작업로프 폴림, 경력별은 10년 이상 숙련공에서 다수 발생

- ❖ (공사종류) 아파트 64%(16명), 근생 20%(5명), 학교 12%(3명) 등
- ❖ (공사규모) 3억 미만 68%(17명), 3~20억 미만 24%(6명), 20억 이상 8%(2명)
- ❖ (재해원인) 로프 폴림 52%(13명), 로프 끊어짐 20%(5명), 고정점 결손 12%(3명) 등
- ❖ (경력별)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공이 사망자의 60%(15명) 점유
- ❖ (작업행동별) 작업 중 56%(14명), 탑승 중 24%(6명), 하강 중 12%(3명) 등

▶ 재해의 대부분이 수직구멍 미설치(21명 사망)로 인해 사망

Ⅱ. 재해발생 원인

□ 사업장 안전 불감증

-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작업 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불이행

- (사업주)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현장의 경우 대규모 현장에 비해 안전인식 및 투자여력 부족*

* 아파트 및 빌딩 신축 또는 재건축 현장의 외벽 도장공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주로 시행 → 소규모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 예산 및 관리감독 우수

- (노동자) 주로 일용노동자로 외벽 도장작업의 위험성 인지 미흡, 불안정한 작업관행 답습* 및 추락예방 안전장비 사용 미흡**

* 10년 이상 경력자의 사망재해 발생 빈도(60%)가 높고, 달비계(도장) 작업에 익숙한 경력자일수록 자신만의 로프매듭법을 고집하는 등 안전을 과신하는 경향

** 수직구명줄 및 작업로프의 줄 꼬임으로 인한 작업간섭 및 착용 불편 등

□ 사업장 발굴·지도점검 한계

- 단기간에 종료되는 외벽 도장공사의 특성으로 대상현장 발굴* 및 적시 지도·점검 한계

* 외벽 도장공사와 관련된 별도의 신고·허가절차 부재

□ 유관기관 협업 부재

- 관련 단체(또는 협회)를 통한 외벽 도장공사 사망재해 예방 협업 부재로 효과적인 재해예방에 한계

❖ 달비계 작업(외벽 도장작업)은 다른 기인물(비계·작업발판, 개구부 등)에 비해 사망재해 빈도(頻度)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 사고 시 대다수가 사망에 이르는 등 재해 강도(強度)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한 안전작업 방식 개선 필요

Ⅲ. 개선방안

① 도장작업 '추락재해 예방 안전정보' 제공 및 지도·점검 강화

- (정보제공) 도장작업 시 안전수칙 및 재해사례 등 '안전정보 OPL(One Point Lesson) 및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개발·배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166개 지부), 도장공사협회(2,767개 회원사), 1000대 건설사

- 유관기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도장공사 재해예방 안전정보 자료 등록 및 업무협업 추진

- (지도점검) 전문건설업체 본사 및 도장공사 현장 지도·점검 강화

- (본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위탁(건설)기관을 통해 전문건설업체(도장공사협회 회원사) 본사 기술지원* 실시

*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 OPL 배포 및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 안전수칙 준수 요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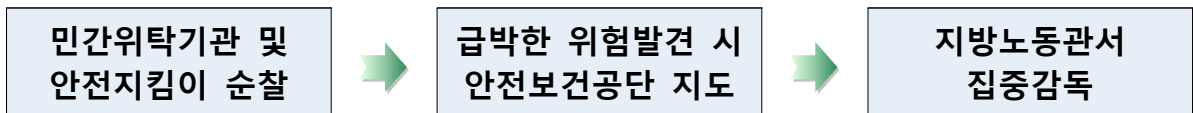
※ 건설업 민간위탁 기술지원 사업 수행 시 위탁기관별 계약물량의 최대 30%까지 본사 기술지원 수행(본사 최대 지원물량: 18,000개사)

- (현장)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기관 및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순찰 시 현장 적극 발굴, 달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건설안전분야 경력 퇴직자를 건설현장 안전지킴이로 채용,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상시 순찰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현장 기술지도 병행)

↳ ('16년) 160명, 52,384회 → ('17년) 160명, 63,360회 → ('18년) 180명, 68,100회

※ 민간위탁기관 및 안전지킴이의 급박한 위험 발견(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등) 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도 → 위험상황 미개선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집중감독



②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권역별 특별안전교육

- (특별교육) 도장작업 시 추락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 안전수칙 및 도장작업의 위험특성 중심 '권역별 특별안전교육' 추진

-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협회) 협업을 통해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현장노동자 적극 참여 유도

※ 안전보건공단 권역별 교육센터(전국 6개소) 및 지역본부·지사(전국 27개소) 주관, 재해현황, 사례, 원인 및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집중 교육 실시

3] **작업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검토**

- (안전장비 보급) 건설업 클린사업* 확대와 병행, 재정지원 품목 및 대상 조정 검토**

*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 도장공사협회 회원사 등을 통한 설문조사 후 실질적 필요 품목 확정

※ 재해다발 기인물

(現) 비계 → (改) 비계 외 달비계 등 추락재해 유발 기인물

< 클린사업 확대 검토(안) >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도장업체에 일괄 지급 방안 검토 및 폐기기한 산정 후 폐기기한 도래 시 추가 지급 방안 검토 필요

4] **달비계 작업설비 개선(중·장기)**

- (안전장비 개발) 최신 재료(신소재) 및 기술·장비 공유를 통한 달비계 작업설비 개선* 방안 추진

* 사망재해 주(主) 원인인 로프 풀림 및 끊어짐 방지, 보호벨트와 등받이가 부착된 작업대(일명: 젠다이) 등

참고

외벽 도장작업 추락 사망재해 세부현황

- (공사금액) 3억원 미만(17명, 68%), 3~20억원 미만(6명, 24%), 20억원 이상(2명, 8%) 순으로 발생

(단위: 명, %)

구 분	계	점유율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	100	10	7	8
3억원 미만	17	68	7	5	5
3~20억원 미만	6	24	3	2	1
20억원 이상	2	8	-	-	2

- (공사종류) 아파트현장에서 64%(16명) 점유, 근생(5명, 20%) > 학교(3명, 12%) > 단독 및 다가구(1명, 4%) 순으로 발생

(단위: 명, %)

구 분	계	점유율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	100	10	7	8
아파트	16	64	7	5	4
근생	5	20	3	1	1
학교	3	12	-	1	2
단독 및 다가구	1	4	-	-	1

- (공사 세부종류) 대부분 유지·보수작업(외벽 재도장, 균열 보수작업 등)에서 발생(22명, 88%)

(단위: 명, %)

구 분	계	점유율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	100	10	7	8
신축	3	12	1	-	2
유지보수	22	88	9	7	6

- (사망자 경력)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공이 사망자의 60%(15명) 점유, 특히 30년 이상 경력자군(群)에서 최다(8명) 사망

(단위: 명, %)

구 분	계	점유율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	100	10	7	8
10년 미만	3	12	2	-	1
20년 미만	3	12	2	1	-
30년 미만	4	16	-	2	2
30년 이상	8	32	2	3	3

※ 총 사망자 25명에는 경력파악 불가 사망자 7명 포함

○ (작업행동) 사망자의 절반이상(14명, 56%)이 작업단계에서 사망

(단위: 명, %)

구분	계	점유율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	100	10	7	8
탑승중	6	24	1	4	1
하강중	3	12	2	1	-
작업중	14	56	5	2	7
이동중	2	8	2	-	-

○ (재해원인) 대부분 달비계를 이용(22명, 88%)하여 도장작업 수행, 달비계 작업로프 풀림으로 절반 이상(13명, 52%) 사망

- 그 외 작업로프 끊어짐(5명, 20%) > 고정점 결손(3명, 12%) 등 순으로 발생

(단위: 명, %)

구분	계	점유율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5	100	10	7	8
작업로프 풀림	13	52	1	5	7
작업로프 끊어짐	5	20	4	1	-
고정점 결손	3	12	2	1	-
불안전한행동	2	8	1	-	1
안전시설 미설치	2	8	2	-	-

○ (안전장비) 수직구명줄 미설치(21명, 95.5%), 안전대 미착용(14명, 63.6%) 등 달비계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단위: 명,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직구명줄	안전대	22	8	7	7
	설치	1	1	-	-
미설치	소계	21	7	7	7
	미착용	14	2	5	7
	착용	4	3	1	-
	파악불가	3	2	1	-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02

토론

아파트 재도장사업 제도개선 토론편

조용경 포스코엔지니어링 前부회장

아파트 재도장사업 제도개선 토론회

조용경 포스코엔지니어링 前 부회장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좁은 생각으로는 이 말은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인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 분야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특히 인명 재해의 위험도가 최고도로 높은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재도장 분야의 사고현황이나, 그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먼저’라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뭐가 그렇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2년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망사고가 매년 250 건에서 300건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도장공사 중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30여 명을 넘나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만 해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추락사고 8건에 7명 사망, 1명 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 대기업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만, 제 경험상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한 숫자도 결코 이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장공사 중의 사고는 거의 전부가 외줄타기 방식의 도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부나 국토교통부가 마음만 먹으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먼저인 정부’를 표방하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그대로 지난 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지난 1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해 정부와 여당은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도급을 제한’ 하는 등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과거의 법에 비해 다소 나아진 점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게 제 솔직한 진단 생각입니다.

분명히 법 자체는 진일보 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모법의 취지를 가로막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예외조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내용이 그렇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됐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고층아파트 외벽도장 분야와 관련해서 보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혹은 이를 준거로 해서 각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는 ‘관리규약’ 등에는 ‘고 김용균 법’의 정신은 눈을 닦고 찾으려 해도 보이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6년 마다 한 차례씩 재도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 6천 5백여 단지가 있으며, 가구수로는 무려 1천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들이 재도장을 시행 하면서 도장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보면, 거의가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은 하청, 재하청 등의 방식으로 결국은 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저가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외벽 도장공사 과정에서 추락사망사고를 증가시키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이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보더라도 매 6년 마다 1만 6천 5백 개소의 추락사고 위험현장이 새로 생겨난다는 가설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강종 비리나 담합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실로 ‘사람이 먼저인 사회 건설’의 국정지표를 지켜나갈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러한 잠재적 위험현장의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저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신축 혹은 재도장의 경우 건물의 규모, 특히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층수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추락 사망의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고층건물 외벽도장 시에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거의 100 퍼센트 사망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3층 이상이 당장 도입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내용이라면 일 단계로 7층 이상 건물의 도장이나 재도장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재해의 발생을 지금보다 70 퍼센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 우선은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15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입찰 적격업체의 평가 기준을 현행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의 위임에 의해 현재 각 시장도지사가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보면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가 두 가지 안이 ‘예시’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 ‘안전과 환경’ 요소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관리규약’들은 안전이나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무시를 해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상의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는 안전과 환경에 관한 평가기준이 적어도 30 퍼센트 이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앙 정부가 지침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건설기업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업재해의 90 퍼센트 이상은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안전투자는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는 생각에서,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지요.

즉, ‘사람이 먼저인 정부’라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행동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가 다소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써야 할 돈은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건설분야의 경우 돈을 쓰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사업의 발주자나 건설회사 최고경영자입니다. 신규건축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될 것이고, 재도장의 경우는 아마도 ‘아파트

관리위원회'나 '자치회'의 회장이 되겠지요.

따라서 고층 아파트 추락재해를 포함하는 중대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최고경영자, 혹은 발주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재해방지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참으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법을 만드는 분들이 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인명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처럼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03

토론

외벽 도색 작업 현장,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박진종 공감신문 기자

외벽 도색 작업 현장,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1. 정부가 외면한 사망사고

2019년 상반기에만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6명 사망이라는 자료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집계한 수치가 아니다. 단순 언론 보도로 알려진 수치일 뿐이다. 현재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외벽 도색 작업 등 작업별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의 보도는 기자들이 사고 현장을 직접 취재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찰 등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언론이 선택해 보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언론이 보도자료를 선택해 보도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망사고가 보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6명이라는 사망자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매해 발생하고 있다. 집 마당의 돌부리도 자주 걸리면, 뽑아 치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정부는 왜 이리도 무관심 한 것인지, 왜 개선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상반기 발생한 6건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안전규정 미준수가 원인이었다. 높은 곳에서 외벽 도색 작업이 이뤄질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조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작업에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발주자와 사업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관심이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속도가 저하된다는 점과 비용 등이 이유가 안전규정 미준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위 규정들은 단순 규정들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구속력이 떨어진다.

사업구조도 문제다. 발주자로부터 도색 공사 도급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하청, 재하청을 준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사금액은 줄어들고 작업자 안전에 대한 비용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다. 재도장 등 대부분의 도장 공사에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가 쓰인다. 하지만, 정작 이 평가표에는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이나 대기환경 보호 방안을 평가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3.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재도장 등 도색작업에 안전 관리자를 두는 규정과 보조 안전로프 착용 등의 안전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도색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산안법을 공사규모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도색 작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도장 사업자의 인식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외벽 도색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당국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추락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사업자는 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해, 사업자부터 안전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항목에 안전과 환경에 대한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 지금까지 발주자는 ‘저렴한 금액을 내고, 결과물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으로 일관해 왔다. 정작 작업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 했다. 앞으로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안전과 환경 항목을 추가해 발주자도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작업 중 추락해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이제는 현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작업자가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누

군가의 가족인 소중한 생명을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실, 외벽 도색 작업 외에도 정부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장이 수도룩하다. 문제가 명확히 드러남에도 바뀌지 못하고 있는 외벽 도색 작업 현장이라도 우선 개선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 모두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04

토론

울산 외벽 도색공사 사망사고

최금섭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울산 외벽 도색공사 사망사고

최금섭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안전국장

■사고 일시: 2019년 7월 27일 13시경

■사고 장소: 울산시 중구 서동 하야트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사고 업체: 재원도장(주)

■사고 개요

재원도장(주) 소속 故최덕웅 조합원은 2019년 7월27일(토)13시경 울산시 중구 서동 하야트 아파트(13층) 외벽 도장 작업 중 옥상에 고정 한 로프 앵글이 파손되어 8층 높이에서 추락함. 119 및 경찰이 긴급히 울산대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

■사고 원인 및 문제점

1. 사고원인

- 부식된 앵글에 작업 로프를 묶고 작업을 진행하다 부식된 앵글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
- 보조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음.

2. 문제점

- 1)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옥상에 안전관리자 혹은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음.
- 2) 안전관리자가 보조 안전로프 착용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보조 안전 로프 착용 없이 작업 진행.
- 3)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 로프를 2중으로 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곳에만 매고 작업을 진행 함.

■재발 방지 및 개선대책

1. 울산지역 아파트 도장 작업 현장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보조 안전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이유-작업능률저하)
2.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고공 로프 작업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행으로 이어져온 보조 안전로프 미착용실태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절 할 필요가 있음.
3. 고공 로프 작업 시 상부(옥상)에 반드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작업자가 작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교육.

